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88
----------	----

제출일자 : 2008. 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구민들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상호간 분쟁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분쟁조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정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분쟁조정 효력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 나. 예산조치 :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반영
 - ▷ 2008년 추경반영 : 7명 × 70,000원 × 4회 = 1,960,000원
-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10 .8 ~ 10. 30(22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과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조정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분쟁 당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및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동의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5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의 철회 및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철회
2. 분쟁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진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 기록서에

따른다.

제14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통보서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 거부 및 중지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 또는 처리진행 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3.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5. 분쟁조정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 ④ 조정 거부·중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거부·중지·종결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종결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신 청 기 준	비 고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	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대표회의장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2.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4. 공동주택(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전체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해당동 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별지 제1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안

조정건명		조정번호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9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분	성명	서명	구분	성명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출석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의견 기록서

조정건명

의견제출
장소·일시

당사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진술요지

기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정 산 서				간 사	위원장	결 재
예치자		예치금액		예치일시		
예치목적						
지출내역						
반납금액		반납자				
계좌번호		반납일시				
<p>「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비용을 위와 같이 정산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관계법령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 ④(생략)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 ④(생략)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3>

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

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